



#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건

11

Videotronics v. Bend Electronics, 564 F.Supp.1471 (1983)

## 01 서지 사항

|               |   |       |                 |
|---------------|---|-------|-----------------|
| 국가   법원       | 미연방 네바다주 지방법원   | 사건번호  | CV-R-83-106-ECR |
| 판결 일자         | 1983.06.06  | 판결 결과 | 일부 인용           |
| 원고            | 비디오트로닉스 (Videotronics, Inc.), 네바다 회사  |       |                 |
| 피고            | 벤드 일렉트로닉스 (Bend Electronics), 비디오트로닉스 오브 오레간 (Videotronics of Oregon, Inc.), 비디오 호라이즌 오브 오레간 (Video Horizons of Oregon, Inc.) 오레간 회사, 톰 헨드릭스 (Tom Hendrix), 빌 스타나드 (Bill Stanard), 로스 브라운 (Ross Brown)  |       |                 |
| 참조 법령         | NRS 598.490(2)  |       |                 |
| 참조 판례         | Rapco Foam, Inc. v. Scientific Applications, 479 F.Supp. 1027, 1029 (S.D.N.Y. 1979); Synercon Technology v. University Computing, 474 F.Supp. 37 (N.D.Tex.1979); Apple Computer, Inc. v. Franklin Computer Corporation, 545 F.Supp. 812 (E.D.Pa.1982) |       |                 |
| 영업비밀          |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   |       |                 |
| 키워드 (Keyword) |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연방법 우선(federal preemption <sup>1)</sup> ), 저작권 법  |       |                 |

## 02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 비디오 게임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 벤드 일렉트로닉스(이하 '벤드')는 원고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이후에 피고 벤드는 피고 비디오트로닉스 오브 오레간(이하 'VO')로 명칭을 변경하여 원고의 제품을 구매하였다. 원고와 피고 벤드 및 VO간에 금전 채무에 대한 분쟁이 생기자 원고는 VO에게 더 이상 제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1) 주(state) 법이 연방법과 상충되는 경우 주 법 대신 연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하급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을 말한다.

---

피고 비디오 호라이즌(이하 'VHI')는 1982년 후반에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VHI가 피고 VO를 대체하는 기업이라고 주장한다. 양 회사의 기업구조와 주주 구성이 동일하고 같은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고 벤드와 VO는 생산 업무를 한 적이 없는 반면 피고 VHI는 생산 및 판매 업무를 하고 있다.

---

피고 VHI가 설립되었을 때 피고 VO의 유형 자산들이 전부 피고 VHI로 이전되었으나 채무는 거의 변제되지 않았고, 비슷한 시점에 피고 VO는 양 회사의 회장인 피고 헨드릭스(Hendrix)에게 1만~1만 5천 달러를 대출하여 주었으며, 피고 헨드릭스는 이를 피고 VHI에게 다시 대출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 VHI는 피고 벤드와 VO가 배급한 원고의 비디오 포커 게임을 복제하여 생산하고 배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비밀 유지약정은 없다.

---

원고는 피고들이 신뢰관계(confidential relationship)를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비디오 오락 장치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했다. 피고들은 소환장(summons)과 소장(complaints)에 대한 파기 신청(motion to quash)<sup>2)</sup>을 하였다. 본 사건은 위 신청들에 대한 것이다.

---

### 03 주요 쟁점

---

원 고



피 고

---

피고 VHI는 피고 벤드와 VO에 제공된 원고의 장비를 복제하여 모조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피고 벤드, VO와 피고 VHI는 별개의 회사이다.

피고 VHI는 원고의 포커 게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 04 판결 요지

주(state) 불공정 경쟁법이나 부정취득법이 연방(federal)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과 모순될 경우에 주 법은 무효화(preempt)<sup>3)</sup>된다. 또한 연방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하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은 같은 이유로 주 불공정 경쟁법이나 부정취득 법에 따른 동일한 보호를 이중으로 받지 못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주 부정취득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데, 원고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은 ‘챌린저 와일드 포커’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청구해야 하며, 주 법인 부정취득의 법리와 영업비밀보호에 기반한 구제는 제공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모조품 포커 게임을 원고의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 피고 VHI가 과거에 그러한 행위를 했었다는 약간의 증거는 있으나, 원고는 현재에도 피고 VHI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제는 금전 손해배상 방식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 외의 소는 원고의 본안 승소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은 거절하고, 피고 헨드릭스, 스테나드, 브라운의 파기 신청은 승인하며, 피고 VHI의 파기 신청은 거절한다.

## 05 Key Point

본 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영업비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 파일 형태로 칩(chip)에 저장되어 있고 이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이 아니라 저작물 무단 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제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간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연방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허나 저작권 관련된 소송은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에 따라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3) 개별 주의 법이 연방법과 모순될 경우 무효화되는 원칙 (federal preemption이라고 함)